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운영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영구수료"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논문심사 및 졸업 자격시험을 재학연한 내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영구 수료 등록생"이라 함)은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이 초과되어 영구 수료 처리된 사람으로 한다.

② 영구 수료자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절차) 영구 수료 등록생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영구 수료 등록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구 수료 등록생의 최초 등록금은 해당 학과 등록금의 30%, 그 다음 학기부터는 해당 학과 등록금의 20%로 한다.

제6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영구 수료 등록생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합격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7조(학과 및 지도교수) ① 영구 수료 등록생이 재학했던 대학원 및 학과(전공)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한 대학원 및 학과(전공)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구 수료 등록생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교수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 청구 논문 제출 시한) 영구 수료 등록생은 등록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이내에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 수료 등록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영구 수료 등록생으로서 면학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동의를 철회하였을 때
3. 논문 제출 시한 내에 완성본을 미제출하였을 때

제10조(기타) 본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서식 제1호〉 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서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대 학 원		과 정	석사( ), 박사( )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입 학 일 자	
영구수료(예정)일		총 취득학점	
생 년 월 일		E-mail	
연 락 처	(핸드폰) (자택전화)		
외국어 시험 (어학강좌 포함)	(통과, 미통과)	종합 시험	(통과, 미통과)

지도교수 위촉	대학원		학과(전공)		성명	

상기 본인은 학위논문 취득을 위하여 논문 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_____(서명)

위 학생은 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제출 시한을 넘겨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_____년 ____월 말까지 학위수여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리라 사료되어 추천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_____(서명)

_____학과 주임교수_____(서명)

* 논문 제출자격 재부여는 통산 1회에 한하며, 논문 제출 기간은 등록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까지임

_____대학원장 귀하